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81
----------	------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1. 제안이유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료연계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기 관 명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재건축사업)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m²)
- 사용면적 : 지상 3~4층(1,130m²), 기부채납시설 활용

(2)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관리 · 운영
 - 아동 심리 · 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정보제공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5.3.1.~2028.2.28.)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 '25년 소요예산(안) : 1,794백만원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 위탁 사무의 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초등학생 대상 마음 진단·적성 검사 및 대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아동 심리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24.9.26)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24.10.8)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동 정서·심리·적성 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사업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신규위탁)
 - 위탁기간 : 3년(2025.3.1.~2028.2.28.)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 재 지 : 강서구 화곡동 공공청사 기부채납 시설
 - ※ 해당 건물 '24.10. 사용승인(준공), 민간위탁 동의 후 '25년도 예산편성하여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리모델링 착수예정
- 시설규모 : 지상 3~4층(1,130m²)
- 주요사업 : 체험형 마음탐색진단 및 해석상담, 맞춤 프로그램 지원
- 근무인원 : 총 13명 (센터장 1, 상담사/전문가 10, 행정인력 2)
- 소요예산 : 1,794,066천원 ('25년도 예산(안))
 - ▶ 민간위탁금 : 668,066천원
(인건비 306,033천원, 운영비 60,894천원, 사업비 299,142천원)
 - ▶ 민간위탁사업비 : 1,126,000천원
(센터리모델링비 1,048,000천원, 물품구입비 78,000천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24.9.26)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의견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가칭)서울 어린이 마음건강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신규)	3년 ('25.3.1. ~'28.2.28.)	조건부 적정	[조건] - 동 건물 내 유사시설(키즈카페) 활용 등 시설조성 재검토 및 적정 예산 편성 검토 - 교육청 운영시설(wee센터) 등과의 중복해소 및 연계방안 마련 - 이용시민이 거부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명칭으로 선정 검토 - 각 대상군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24.10.8)

부서명	위탁사무명	심의결과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가칭)서울어린이 마음건강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적정 (조건 이행)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²⁾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 심리진단 및 지원 등을 위한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에 관한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아동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제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³⁾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과 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민간위탁조례」 제4조와 같이 일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바, 위탁사무의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동 사무에 관하여 개별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193)’이 이번 정례회(제327회)에 본 동의안과 함께 상정되었음.

<서울 어린이 미래활짝센터 및 민간위탁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교육청 운영시설(*Wee센터) 등과 중복해소 및 연계방안 마련 필요, △대상군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적된 바, 집행부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세밀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Wee센터(교육청, 서울 기준 26개소 설치·운영) - 관내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또는 Wee클래스에서 상담받기 어렵거나 연계한 학생 상담 및 치료

Wee클래스(학교內 상담실, 서울 기준 초등학교 中 202개소 설치·운영) -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관련 개인상담 및 치료(「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4 종합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에 대한 사무는 아동에게 심리·정서 진단과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차별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심리상담 후 각 대상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지적된 바 향후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동에게 양질의 심리·정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81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료연계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나.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전문성,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관명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1027-29 일원 (강서구 화곡1주택재건축사업)
- 규모 :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86.49㎡)
- 사용면적 : 지상 3~4층(1,130㎡), 기부채납시설 활용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관리·운영

- 아동 심리·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5.3.1.~2028.2.28.)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 민간위탁(공개모집)
 - '25년 소요예산(안) : 1,794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초등학생 대상 마음진단·적성 검사 및 대상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아동 심리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

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조건부 적정('24. 9. 26)
- '24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 적정('24. 10. 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이영신(☎ 2133-5168)